# 녹색당 전국선거관리위원회 선거시행세칙

2021년 11월 18일 전국선거관리위원회 제정

## 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본 시행세칙은 녹색당의 당헌·당규에 의해 진행되는 선거가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본 시행세칙은 전국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하는 당직선거 및 공직후보자 선출선거에 적용되며,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본 시행세칙을 준용할 수 있다.

### 제2장 후보자등록 및 사퇴

## 제3조 (후보자등록서류)

- ① 후보자 등록과 관련한 일체의 서류 및 절차는 당헌·당규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공고 내용에 따른다.
- ② 후보자 추천인 명부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명부만을 제출하되 후보자는 선거 종료후 3개월까지 추천을 입증할 수 있는 원본을 보관하여야 하며,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. 이때, 원본은 컴퓨터 또는 휴대전화 화면을 캡쳐한 전산자료 형태로도 할 수 있다.
- ③ 후보자 등록 이후에도 후보자 측 과실로 인한 추천인 기준 미충족이 드러난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규정 제31조 제1항에 따라 등록무효 처리를 할 수 있다.

# 제4조 (후보자의 기호 또는 순서)

- 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기호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기호를 대신하여 후보등록 공고, 투표용지 상의 표기순서에 대한 추첨으로 대신할 수 있다.
- ② 후보자 등록기간 이후 투표개시일 전까지 후보자가 사퇴할 경우 후보자 명부에서 삭제하되 사퇴한 후보자의 기호는 공석으로 두며 나머지 후보자의 기호도 변경하지 않는다. 단,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기호를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.

③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규정 제32조에 따라 후보자 등록신청 마감 직후 기호 또는 순번 추첨을 진행하되 후보자 또는 대리인이 불참한 경우 불참한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추첨 결과를 수용하여야 한다.

### 제3장 선거인명부

제5조 (선거인명부의 제공 및 당원정보 보호)

- ① 선거관리규정 제27조에 의한 선거인명부 열람을 하고자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서만 가능하다.
- ②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지명한 자에게 당원 정보를 교부하지 않고,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을 위탁발송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. 단, 그 횟수와 비용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.
- ③ 본 조 제2항에 따르지 않고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지명한 자에게 당원 정보를 교부하기로 한 경우, 그 교부 방법과 시기, 부수, 포함항목 및 당원정보를 이용한 선거운동 횟수와 비용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. 단, 당원 정보 교부시 출력본에 녹색당 직인을 날인하여 각 후보자 당 1부씩 교부하되, 해당 선거 이후 반납하여야 한다.
- ④ 당원정보를 교부 받고자 하는 후보자와 후보자가 지명한 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당원정보보호 서약서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
- ⑤ 교부 받은 당원정보의 사본 또는 전산자료 복사본을 타인에게 양도·대여할 수 없다.
- ⑥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지명한 1인 외에는 교부 받은 당원정보를 열람할 수 없다.
- ⑦ 교부 받은 당원정보는 해당 선거의 선거운동 목적 외 어떠한 목적으로도 이용할 수 없으며,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방법으로만 이용해야 한다.
- ⑧ 본 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명백하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한 자에 대해서는 당의 징계 및 고소. 고발을 포함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.

제6조 (선거권 상실자의 처리)

① 당헌 및 당규에 따라 선거인명부를 확정했음에도 탈당 등의 사유로 선거권을 상실했을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투표 개시 2일 전까지 선거인명부에서 삭제할 수 있다.

제4장 선거운동

제7조 (선거운동 일반)

- ① 후보자는 당헌 및 당규의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. 단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일부 선거운동의 방법 및 횟수 등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.
- ② 당내 공식조직의 단체채팅방에서는 선거운동이 불가능하다.
- ③ 교부 받은 당원정보를 이용한 호별방문은 금지한다.
- ④ 교부 받은 당원정보를 이용한 카카오톡, 텔레그램, 페이스북 메시지, 인스타그램 DM 등 메신저 또는 그 유사 수단의 1:1 채팅 및 전화는 금지한다. 단, 수신자가 사전에 수신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방식은 예외로 한다.
- ⑤ 교부 받은 당원정보를 이용하거나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하여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시 그 제목에 선거운동임을 밝혀야 한다.

제8조 (투표기간 중의 선거운동) 투표기간 중 선거운동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
- 1.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, 녹색당 홈페이지의 당원게시판, 후보자가 직접 구축한 홍보페이지 등 웹사이트 또는 전화, 문자메시지, 이메일, 대면접촉의 선거운동은 허용한다.
- 2. 자동응답시스템, 자동동보통신, 대량발송프로그램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한다.
- 3. 교부 받은 당원명부를 이용한 모든 방식의 선거운동은 금지한다.
- 4. 현장투표소에서의 선거운동은 금지한다.

#### 제9조 (투표독려)

- ① 투표독려는 투표기간 중에도 가능하다. 단, 교부 받은 당원명부를 이용한 투표독려는 예외로 한다.
- ② 투표기간 중 현장투표소에서의 투표독려는 가능하다.
- ③ 명백한 지지호소 문구가 없더라도 투표독려 시 특정 후보를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언급된 경우 선거운동으로 간주한다. 다만 후보자 본인이 투표독려를 할 경우 발신인으로서 후보자 이름이 표출되는 것은 허용한다.

## 부칙

제1조 본 시행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라도, 필요한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결정에 의해 정할 수 있다.

제2조 본 시행세칙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 주최 후보자 간담회 시까지 확정하여 후보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.